

Deloitte Insights

August 2026

K·C·A
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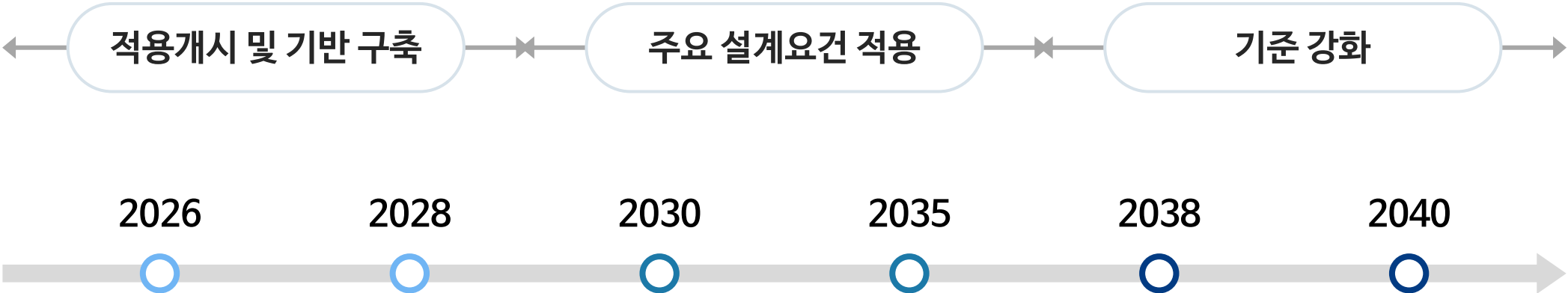
2026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화장품 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단계별 적용요건과 TD·DoC 작성·관리

Deloitte.

PPWR 시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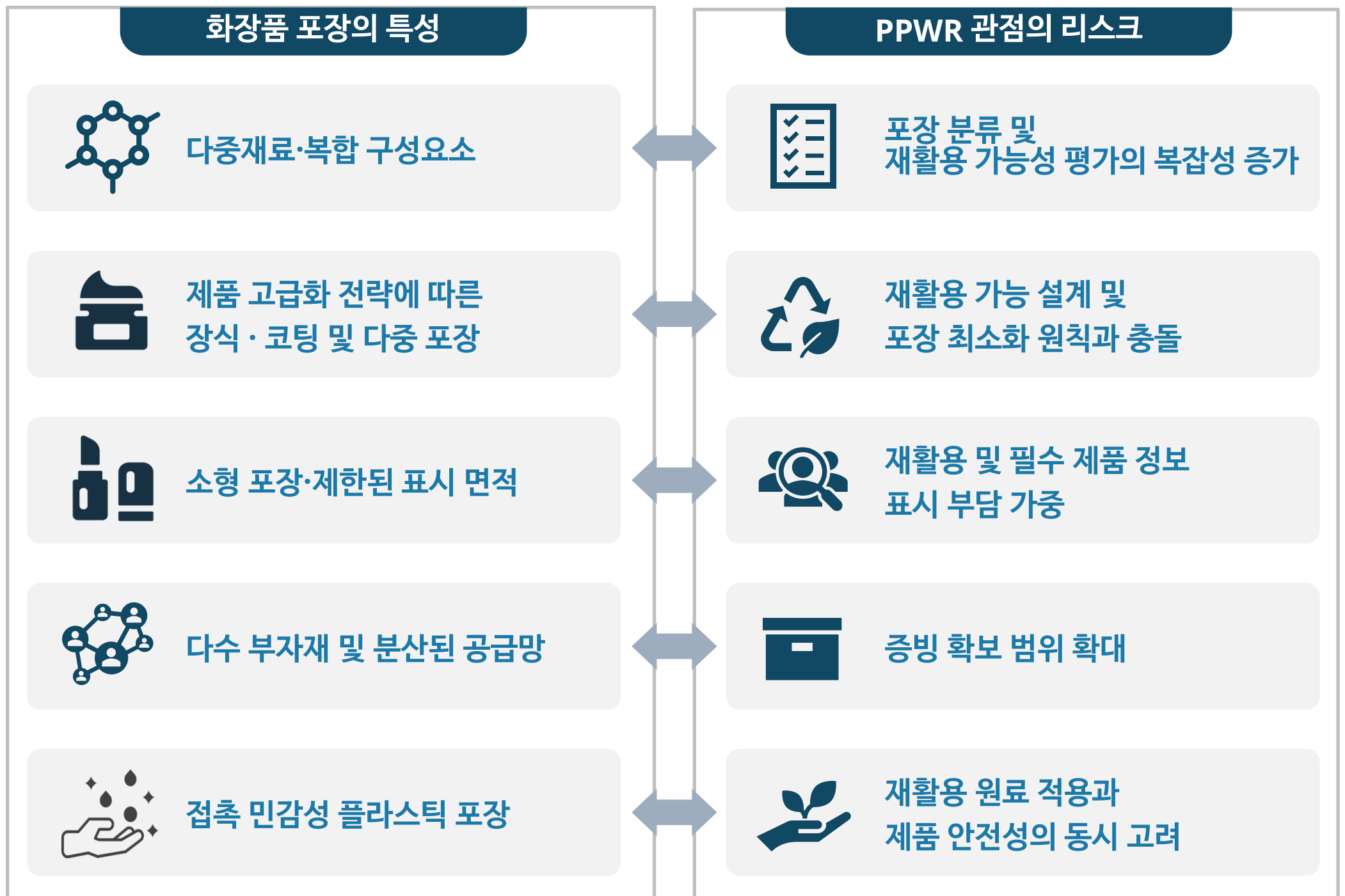


2026	2030	2038
• PPWR 일반 적용 개시 • 우선 적용요건 평가·문서화 • TD·DoC 관리체계 구축	• 재활용 친화적 설계·등급 적용 •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적용 • 포장 최소화 요건 적용	• 재활용 가능성 C등급 제외 • A·B등급 포장만 시장 출시 가능
2028	2035	2040
• 특정 포장의 퇴비화 요건 적용 • 재료 구성 조화표식 적용 • 재사용 가능 포장 조화표식 적용	• 감축 목표 상향 • 대규모 재활용 평가 도입	•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강화

* 일부 요건의 적용일은 관련 위임·이행법률의 발효일과 연동될 수 있다.
조항별 세부 적용일정은 인사이트 보고서 및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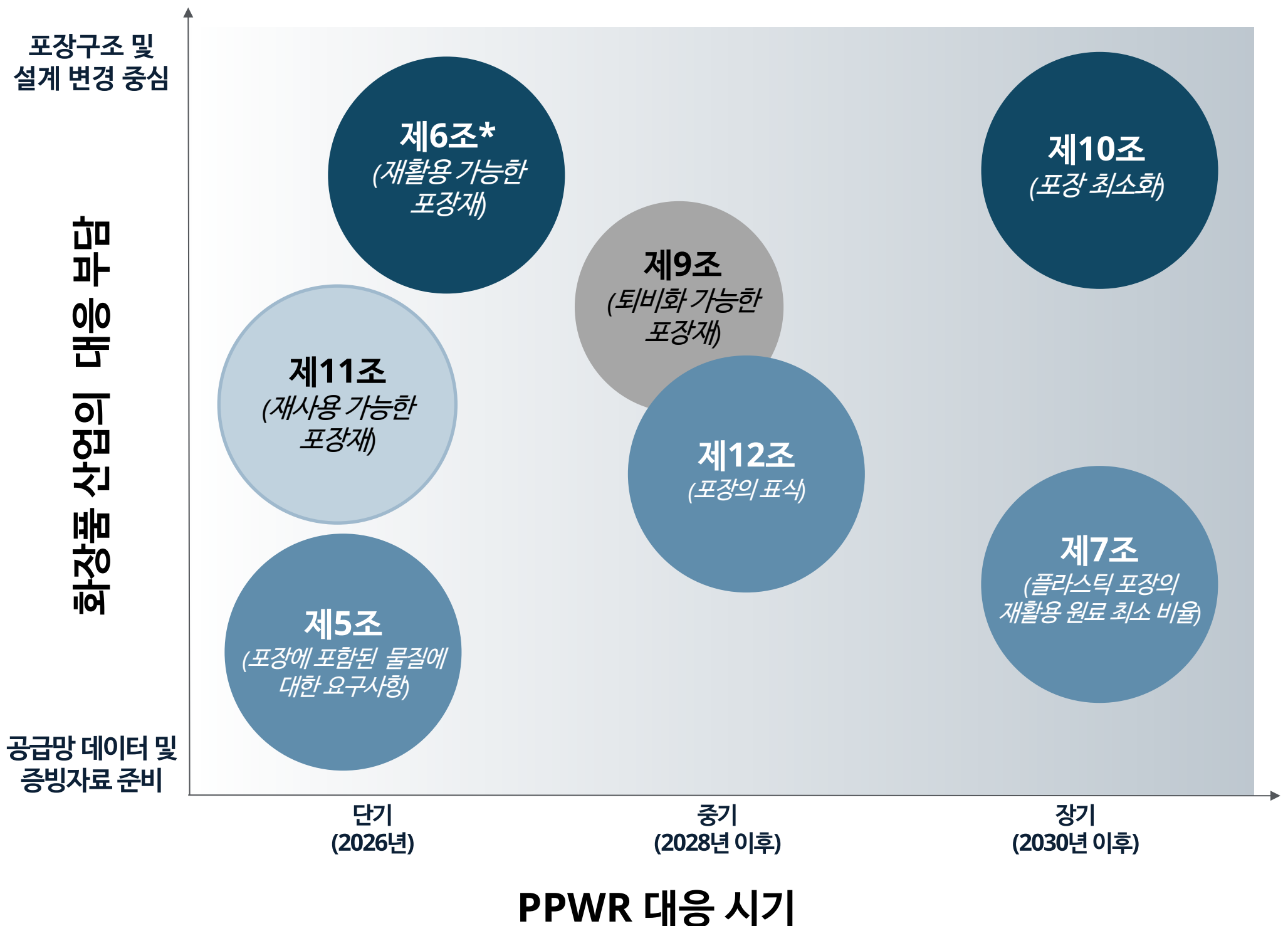
화장품 산업이 직면한 PPWR 대응 이슈

브랜드 경험을 위해 다양한 포장 형태가 요구되는 화장품 산업 특성과,
포장 단순화·재활용성 강화를 요구하는 PPWR 방향성 간 구조적 충돌 존재



PPWR 주요 조항별 대응시기와 화장품 산업 영향

복합 포장구조를 가진 화장품 포장재는 초기 문서 체계 구축과 함께, 후속법령으로 구체화되는 설계·산정·표식 기준을 제품별 포장정보에 반영하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



* 제6조는 2026년 일반 재활용 가능 요건부터 적용되며, 2030년 이후 DfR 기준·등급 및 2035년 이후 대규모 재활용성 요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

화장품 산업 대응 사례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 Recyclable packaging

CASE STUDY - SUQQU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컴팩트 포장 재료 변경

- ✓ 세팅 파우더 컴팩트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ABS에서 코폴리에스테르로 전환
- ✓ 광택·내구성·충격 성능과 PET 재활용 흐름과의 호환성을 함께 고려
- ✓ 재활용 가능한 포장 설계를 고려한 재료 선택 사례
- ✓ (특징) 프리미엄 화장품의 심미성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성을 고려한 재료 전환



▲ GLOW SETTING POWDER model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Reusable packaging

CASE STUDY - Speick Naturkosmetik

보증금 기반 재사용 가능한 화장품 포장 운영

- ✓ 보디로션·샤워젤에 300mL PET 재사용 용기 적용
- ✓ 0.50유로의 보증금과 회수·세척 체계 운영
- ✓ 회수된 용기를 최대 10회까지 재충전하고 수명 종료 후 재활용
- ✓ (특징) 용기 설계에 그치지 않고 보증금·회수·세척·재충전을 연계한 재사용 시스템 구축



▲ Organic 3.0 제품군

EU 회원국별 PPWR 대응 동향

» PPWR은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지만,
등록·보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리배출 표식 및 집행체계는 회원국별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VerpackDG

포장시행법(VerpackDG) 마련 및 EPR 범위 확대

기존 관리 시스템(ZSVR·LUCID) 유지 및 EPR 의무 대상 전면 확대

해외 직수출 기업의 지정대리인 임명 의무화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구비 및 보관

재활용성 연계 에코모듈레이션* 가동 예정

* 재생 플라스틱 포장은 보상하고, 버린 플라스틱 포장은 추가 부담 부과



AGEC

순환경제법(AGEC) 유지와 PPWR 간 조정

AGEC의 감축·재사용 체계 유지
('40년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퇴출, '30년 플라스틱병 50% 감축 등)

폴리스티렌 사용금지 시점을 PPWR 일정에 맞춰 2030년 1월 1일로 조정

자체 분리배출 표시인 Triman 및 Info-Tri는 유지 후 EU 조화 표식 마련 후 대체 예정

재생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포장관리령

기존 포장관리령, EPR 제도와 연계성 강화

포장관리령과 생산자책임기구 (Verpact) 중심의 EPR 체계를 PPWR에 맞춰 정비

폐기물 소량 배출업체 EPR 부담금 면제 폐지

해외 기업에 현지 대리인 지정과 EPR 등록·데이터 보고 의무 적용

에코모듈레이션 요금을 재활용 가능성과 재활용 원료 함량에 연계하여 조정 예정

PPWR은 EU 공통 규정이지만, 기존 국내 포장·EPR 제도와 연계하는 방식은 회원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행 차이와 세부기준의 불확실성 속에서 체코·이탈리아 등 8개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에 명확한 후속법률 마련 일정과 EU 전역의 통일된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실무지침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EU 산업계의 주요 쟁점

» PPWR의 일반 적용일인 2026년 8월 12일을 앞두고 산업계는 세부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PPWR 본문을 재검토할지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후속법률로 보완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 현지 산업계의 주요 쟁점 및 진영별 입장

일부 조항 재검토 및 유예 요구		PPWR 원안 유지 및 신속 이행
2026년 4월 29일	서한발표 시기	2026년 6월 3일
코카콜라·하이네켄·맥도날드 등 식음료·소비재 및 포장기업 130여 개	주요 주체	IKEA·ALDI·Shell·Amcor·Mondi 등 글로벌 브랜드 및 포장·재활용 기업 약 200개 (<i>Plastics Recyclers Europe</i> 주도)
세부기준과 실무지침 없이 2026년 8월 적용에 대응하기 어려움	핵심 주장	PPWR 본문을 재개정하지 않고 후속법률을 통해 신속히 이행해야 함
후속법률과 시험기준 미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및 규제 미준수 위험	요구 배경	선제적 투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 및 장기적 사업 예측 가능성 확보
PFAS 제한 적용 유예 및 일회용 포장 제한·재활용성·재생원료·재사용 · 표식 요건 재검토	EC 요구사항	PPWR 본문 재개정에 반대하고 위임·이행법률과 기술지침을 신속히 마련

TD와 DoC의 역할

구분	기술문서(TD)	EU 적합성선언서(DoC)
주요 역할	포장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입증한 과정과 근거를 기록	TD를 근거로 생산자가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선언
법적 근거	제15조·제38조 및 부속서 VII	제15조·제39조 및 부속서 VIII
주요 내용	포장 일반정보, 도면·BOM·재료, 구성과 작동, 적용 기술표준, 조항별 평가결과, 시험·공급망 자료	포장 식별정보, 생산자·대리인 정보, 선언대상, 적용 법규, 기술표준·기술사양, 발행정보 및 서명
작성 시점	시장 출시 전 적용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TD를 통해 적용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된 후 작성
책임	생산자가 작성하고 적합성 입증자료를 관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고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
보관기간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가능한 포장 10년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가능한 포장 10년

Point

- ✓ DoC는 제3자가 발급하는 인증서가 아니라 생산자가 작성하는 적합성 선언임.
- ✓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확인서는 적합성평가를 지원하는 자료이며, 실제 포장 사양과 자료를 대조하여 최종 적합성을 판단하는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음.

TD · DoC 작성 절차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Assurance-ESG 그룹

Assurance-ESG 그룹은 에너지·자원·산업재, 소비재, 금융, 바이오·헬스케어, 첨단기술·미디어·통신, 정부·공공 등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ESG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경흠 수석위원

A&A ESG

☎ 02 6676 1949

@ kyeon@deloitte.com

송가람 Senior Consultant

A&A ESG

☎ 02 6676 1898

@ garsong@deloitte.com

이수경 Senior Consultant

A&A ESG

☎ 02 6138 6897

@ sugylee@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인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